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장학금 관리 지침

서울과학기술대학교(학생지원과), 02-970-6055

전부개정	2009. 1. 1.	개정	2010. 4. 1.	개정	2010. 7. 21.
개정	2010. 12. 29.	개정	2011. 6. 17.	개정	2011. 7. 27.
개정	2012. 2. 21.	개정	2012. 6. 1.	개정	2012. 8. 1.
개정	2012. 9. 1.	개정	2013. 4. 4.	개정	2013. 7. 3.
개정	2013. 8. 1.	개정	2013. 11. 25.	개정	2014. 4. 1.
개정	2014. 10. 8.	개정	2015. 2. 11.	개정	2015. 11. 26.
개정	2016. 5. 26.	개정	2016. 7. 13.	개정	2016. 9. 1.
개정	2017. 2. 3.	개정	2017. 3. 2.	개정	2017. 6. 14.
개정	2017. 8. 22.	개정	2018. 3. 15.	개정	2018. 8. 9.
개정	2018. 12. 4.	전부개정	2019. 2. 15.	개정	2019. 3. 14.
개정	2019. 9. 18.	개정	2020. 2. 6.	개정	2020. 2. 28.
개정	2020. 8. 25.	개정	2020. 10. 28.	개정	2021. 3. 2.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생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장학금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종류,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학금관리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구분)** 이 지침에 따라 지원하는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학비감면장학금: 해당 학생의 등록금 납부 범위 내에서 고지서 상 선 면제 또는 선 감액하거나 부득이하게 기납부한 등록금액 자체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2.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 학업수행 과정에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생활관(기숙사) 지원금, 생활비 지원금 등<개정 2021. 3. 2.>
3. 대가성장학금: 근로장학금, ST인턴장학금, 학생조교장학금 등<개정 2021. 3. 2.>
4.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5. 명예선발장학: 장학금 지급 없이 학업수행 과정에서의 우수함을 증명하기 위해 장학수혜증명서 상에 기록을 위하여 선발하는 장학 등<신설 2020. 8. 25>

**제4조(중복지원 제한)** 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또한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다만, 교외장학금에 해당하여 지원기관의 기준에 따라 선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 8. 25>

1. 학사과정 학생에게 지급하는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학금<개정 2021. 3. 2.>
  2. 대학원과정 학생에게 지급하는 제3조제3호의 장학금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중복지원이 허용되는 장학금이더라도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중복 수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포기확인서"를 제출하여 본인이 원하는 장학금을 선택할 수 있다.

## 제2장 교내장학금

### 제1절 학부

**제5조(장학금의 종류)** 학사과정의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성적우수장학금: 신입학 전형 시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2. 성적우수장학금: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3. 법정장학금: 교육보호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과 북한 이탈주민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4. 어의장학금: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 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본인, 부모) <개정 2019. 9. 18.>
  - 다. 아동복지시설 기수용자 및 입학 전형 시 소년소녀가정 <개정 2019. 9. 18.>
  - 라. 소득 8구간(분위) 이하 학생(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에 따른 환산 소득 구간 기준) <개정 2019. 9. 18.>
5. 봉사장학금: 학생자치기구 간부 등으로서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6. 외국인장학금: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7. 국제교류장학금: 본교와 외국대학 간의 학술교류협정에 따라 선정된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8. SeoulTech 가족장학금: 2명 이상의 부모·형제·자매·남매가 본교에 동시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그 중 1명의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9. 공로장학금: 기술·체육·예능·외국어 분야 등의 국내외 각종 대회 및 전사회에서 학교의 명예를 떨쳤거나 그 밖에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10. 능력인증장학금: 학생의 우수한 자질을 장려하기 위하여 외국어 능력을 인증받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11. 삭제 <2019. 9. 18.>
12. 삭제 <2019. 9. 18.>
13. 근로장학금: 등록금을 스스로 마련하기 위하여 교내의 각종 업무에 근무하는 다음의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가. 튜터장학생: 타 학생의 학습을 도와주기 위해 선정되어 튜터 활동을 하는 학생<개정 2021. 3. 2.>
  - 나. <삭제 2021. 3. 2.>
  - 다. 행정근로장학생: 교내 부서에서 일정시간 근무하는 학생<개정 2021. 3. 2.>
14. 학생DREAM마일리지장학금: 교내 필수 교육에 참여하거나 대학과 지역사회 협력에 기여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개정 2021. 3. 2.>
15. 특별지원장학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가정환경이나 경제사정 변화 등으로 갑작스러운 가계곤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장학금<개정 2020. 8. 25>
16. SeoulTech 희망장학금: 저소득층 학생 중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17. 학과평가장학금: 학과평가지원금 사용계획에 따라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18. 인재원장학금: 국가공무원 5급(행정, 기술)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및 국가 공인자격시험(변리사, 공인회계사 등)을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인재원 선정기준에 따라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개정 2020. 8. 25>
19. 삭제 <2020. 8. 25>
20. 총장장학금: 모범적인 학생 및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학생 중 학생처장이 추천을 하고, 총장이 그 공로를 인정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21. 현장실습장학금: 단기현장실습 및 장기현상실습(Co-op)프로그램, 해외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개정 2020. 8. 25>
22. 글로벌 인재양성 및 해외봉사활동장학금: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에서의 국위선양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23. 삭제 <2020. 8. 25>
24. 코로나학업장려장학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생활 및 학업지원을 위해 일시적으로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25. 고품질교육보증 장학금: 강의 수준 개선과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강의평가 결과가 일정 점수 이하인 과목의 수강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개정 2021. 3. 2.>
26. ST인턴장학금: 교내 부서에서 전공분야 또는 전문분야 인턴으로 참여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개정 2021. 3. 2.>

**제6조(장학금 지급기준)** ① 제5조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장학금은 별표 1부터 별표 18까지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제5조제21호 및 제5조제25호부터 26호까지의 장학금은 별표 20부터 별표 22까지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 3. 2.>

② 제5조제20호의 장학금 지급액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1. 3. 2.>

③ <삭제 2021. 3. 2.>

④ 제5조제22호 및 제24호의 장학금은 학생처의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⑤ 삭제 <2020. 8. 25>

⑥ 성적평가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선택적 Pass/Fail 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성적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배정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장학금은 성적우수장학금에 우선하여 배정한다.

1. 입학성적우수장학금(계속장학생 포함)
2. 법정장학금

3. 어의장학금
4. 봉사장학금
5. SeoulTech 가족장학금
6. 외국인장학금

② 성적우수장학금 수혜인원은 제1항에 따른 우선선발을 제외한 인원 범위 내에서 각 대학별로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이 경우 학과·학부 및 학년 별 배정인원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8조(그 밖의 사항)** ① 성적기준 적용 시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21. 3. 2.>

1. 방학 중에 취득한 현장실습 및 계절학기 성적은 제외한다.
2.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 후 해외 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이 없는 경우,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전 본교에서 취득한 최종학기의 성적을 적용한다.
3. 코업프로그램(장기인턴십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취득한 학기성적으로 성적우수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삭제 <2021. 3. 2.>

③ 학과의 자체 선정기준을 적용하는 장학금의 경우에는 장학생 선정 신청자와 친·인척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사람은 장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한다.

④ 성적우수장학금의 학과 추천 대상자 중 타 장학금 수혜로 선발에서 제외되는 학생은 명예 선발하여 장학수혜증명서 상에만 기록한다.<신설 2020. 8. 25>

⑤ 미등록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해당학기는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1. 3. 2.>

1. 학비감면장학금 중 제5조제1호, 제5조제3호, 제5조제4호 및 제8호
2. 학비감면장학금 이외의 장학금

⑥ 근로장학생 및 ST인턴장학생은 근무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21. 3. 2.>

## 제2절 대학원

제9조(대학원장학금의 종류) 대학원과정의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적우수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2. 어의장학금: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학비 조달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3. 외국인장학금: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4. 봉사장학금: 대학원 원우회 업무·운영 등에 공로가 있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5. <삭제 2021. 3. 2.>
6. 학생조교장학금: 학부(과), 대학원 및 그 밖의 부서의 학사, 실습지원,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7. <삭제 2021. 3. 2.>
8. <삭제 2021. 3. 2.>
9. 공로장학금: 기술·체육·예능·외국어 분야 등의 국내외 각종 대회 및 전 사회에서 학교의 명예를 떨쳤거나 그 밖에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10. 총장장학금: 모범적인 학생 및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학생 중 대학원장이 추천을 하고, 총장이 그 공로를 인정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11. 학·군제휴장학금: 학·군제휴 협약에 따라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신설 2020. 2. 6.>
12. 신진연구인재장학금: 연구실적이 우수한 입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신설 2020. 2. 28.>
13. 미래인재장학금: 미래인재양성 예비교육연구단(팀) 지원 사업(대학 자체 사업) 참여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신설 2020. 10. 28.>

14. 혁신인재장학금 : 산업사회 문제 해결 분야의 미래인재양성 예비교육연구단 (팀) 지원 사업(대학 자체 사업) 참여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제10조(대학원장학금 지급기준)** 대학원과정의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은 별표 23부터 별표 35까지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9조제10호의 장학금 지급액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20. 10. 28.>

### 제3장 교외장학금

**제11조(교외장학금의 구분)** 교외기관이 본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0. 8. 25>

1. 국가·지자체가 직접 지원하거나 중·장기로 운영하는 사업에 수반되어 장학금을 지원하는 경우

가.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국립대학육성사업 등

2. 국가·지자체 또는 그 산하기관에서 운영·출연하는 장학단체가 지원하는 경우

가. 한국장학재단, 한국연구재단 등

3. 기업, 교외단체(개인 포함) 등

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체

나. 법률에 의한 장학법인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장학 사업을 실시하는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

**제12조(교외장학생 인정기준)** 교외장학생 선정은 교외 지원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한정하여 본교 장학생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0. 8. 25>

1. 장학단체, 개인, 회사 등에서 장학금을 기탁하여 본교의 관계규정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2. 공익법인 장학단체에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장학생을 모집하여 자체 선발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학생



3. 장학단체, 개인, 회사 등에서 총장(학장)으로부터 장학생 적격자로 추천받아 선발된 학생
4. 제11조제1호에 따라 사업비 교부기관의 집행 기준에 따라 교내 사업부서에서 기준을 정하여 장학생으로 선발한 학생
5. 그 밖에 장학위원회에서 인정한 학생

**제13조(교외장학생 선정기준)** 교외장학생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단체, 개인, 회사 등에서 자격요건(지역, 문종, 성적 등)을 정하였을 경우 그 요건을 갖춘 학생
2. 장학단체, 개인, 회사 등에서 자격요건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으로 학비 마련이 곤란한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장래가 촉망되며, 학업성적 기준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5(C+) 이상인 학생을 원칙으로 하되, 장학생 선정 신청자 중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학업 성적이 부진하나 교육상 학비보조가 필요하다고 장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제1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교외기관이 정한 요건이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불법·부당하거나 특정인을 지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는 적절성을 판단하여 기준을 재요청한다.<신설 2020. 8. 25>
4. 장학단체, 개인, 회사 등에서 특정학생을 지정하여 선발·추천하는 경우 다음 자료를 확인하고 장학생으로 선발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발·추천을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국가·지자체가 지원하는 장학금은 제외한다.<신설 2020. 8. 25>

가.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장학생 선발·추천 기준, 방법 및 절차

나.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지정한 학생과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문구를 포함한 자료

**제14조(교외장학생 선정절차)** ① 총장은 장학단체, 개인, 회사 등으로부터 장학생 추천의뢰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장학생 배정

가. 대학(원), 학과·학부, 전공 등을 정하였을 때에는 해당대학(원)에 배정한다.

나. 대학(원), 학과·학부, 전공 등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대학(원)별 수혜율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다. 졸업, 휴학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인원을 보충할 때에는 해당대학(원)에 계속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장학생 추천

가. 학장 또는 원장은 지도교수·학과장·학부장 또는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자로 인정되는 학생을 총장에게 추천한다.

나. 총장은 이를 심사 확정하며 필요로 하는 제반서류를 갖추어 추천한다.

## 3. 장학생 교체

가. 장학생 추천 시기는 일반장학생 선정 시기와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장학생 선발이 끝난 후에 장학생 추천 의뢰가 있을 때에는 학사력에 따른 등록시기 전까지 선정하여 교체 추천한다.

나. 장학생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탁자와 협의하여 교체한다.

**제15조(장학생 추천서 발급)** 총장의 추천서는 장학단체, 개인, 회사 등이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총장에게 적격자를 추천 의뢰하였거나 공익법인 장학단체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 한정하여 발급한다.

**제16조(장학금 영수증 발급)** ① 장학단체, 개인, 회사 등에서 장학금을 지급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정하여 총장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한다.

1. 장학단체, 개인, 회사 등에서 총장에게 적격자를 추천 의뢰하였거나 공익법인 단체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한 후 장학금을 장학단체에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총장을 통하여 지급할 경우

2.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총장에게 장학금을 기부하여 총장이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할 경우

② 장학단체가 총장에게 적격자를 추천 의뢰하지 않고 자체 선발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총장 명의의 영수증은 발급하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장학위원회에서 인정한 학생에게는 추천서 및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17조(그 밖의 사항)** ① 교외장학금은 재단법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발전기금 발전기금회계로 일괄 수입 처리한다. 다만,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② 교외장학금 입·출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재단법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 발전기금회계에 세입 처리한다.

③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금의 성적·이수학점 기준 적용시 계절학기(방학 중 현장실습 포함) 성적은 제외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외국인장학금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교내장학금관리지침 및 교외장학금업무처리지침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2008학년도 2학기 어의장학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외국인장학금은 2011년 신·편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10년 신·편입학생까지는 종전의 외국인장학금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봉사장학금 개정 성적기준은 201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제정 이후 성적우수 장학생 및 외국인 장학생(재외국민  
과 외국인 장학생 포함)으로 선발된 자는 선발 당시의 규정을 따르며 그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신입생 장학금 관련 개정 기준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능력인증장학금, 능력향상장학금, 능력향상인센티브 장학금, 근로장학금, 특별지원 장학금 개정 기준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대학원 장학금 중, 외국인장학금(특수 및 전문대학원만 해당), 입학성적우수장학금(일반대학원만 해당) 개정 기준은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하며, 석·박사통합과정장학금은 2017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학부 미래융합대학장학금과 공로장학금, 대학원 공로장학금의 개정기준은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하며, 학부 외국인장학금과 SeoulTech 희망장학금, 대학원 총장장학금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폐지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학교설치령의 개정으로 2018년 3월 1일부로 폐지되는 종전의 산업대학으로서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학생이 편입학 하는 경우, 종전의 산업대학에서 이수 및 취득한 교과과정을 산입하여, 장학생으로 선발 할 수 있다. (기존 연속장학생 자격 유지 포함)

### 부칙

제1조(시행일) 대학원 장학금 중, 입학성적우수장학금, 학생조교장학금, 학·석사 연계과정 장학금은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교내장학금 중 “[별표3] 마일리지 장학금 영역 인정점수 기준” 과 교외 장학금 “9. 기타사항” 중 “마”항의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성적산출 기준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4의 “선정기준” 변경에 따라 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생에게는 2019학년도 1학기에 한정하여 종전의 지침을 적용한다.

### 부칙 <제133호, 2019. 3. 1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조교 운용 지침 전부개정지침)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개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장학금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5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47호, 2019. 9. 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 제10호 내지 제12호는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제163호, 2020. 2. 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5호, 2020. 2. 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8호, 2020. 8. 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5호 및 제8조의 제4항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제196호, 2020. 10. 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5호, 2021. 3. 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이미 선정된 대학원의 입학성적우수장학금, 학사·석사연계과정장학금, 석사·박사통합과정장학금, 신진연구인재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별표 27, 별표 29, 별표 30, 별표 33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

② 2021학년도 신입생 중 입학성적우수장학금, 학사·석사연계과정장학금, 석사·박사통합과정장학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원생은 제1항의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개정 2020. 10. 28.>

## 입학성적우수장학금 지원기준 (제6조 관련)

구분	선 정 기 준	지 원 내 역
신입생 (수시 모집)	<p>&lt; 공통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합격자 및 최초선발자에 한함</li> <li>▷ 실기전형: 학생부 및 실기점수 50% 반영</li> <li>▷ 실기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 최종단계 점수 반영</li> <li>▷ 인원산정: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함</li> <li>▷ 동점자 처리 기준(동점자 발생에 따라 선발인원 초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료 전액 및 수업료 70%: 동점자까지 유리한 지급내역으로 적용하되 총 선발인원수는 유지 함</li> <li>- 수업료 면제30%: 동점자 전원을 선발함</li> </ul> </li> <li>▷ <b>선발제외: 인공지능응용학과 2021~2022학년도 신입생</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생활우수자, 논술 전형: 입학성적 총점 순으로 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상위 1% 이내인 학생</li> <li>▷ 학생부교과우수자, 농어촌학생, 평생학습자, 특성화고졸재직자, 실기전형: 입학성적 총점 순으로 전형별 모집인원의 상위 2% 이내인 학생</li> <li>▷ SW(소프트웨어)인재전형: 입학성적 총점 순으로 전형별 모집인원의 상위 10% 이내인 학생</li> </ul>	입학년도 1학기 수업료 전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생활우수자, 논술전형: 입학성적 총점 순으로 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상위 3% 이내인 학생</li> <li>▷ 학생부교과우수자, 농어촌학생, 평생학습자, 특성화고졸재직자, 실기전형: 입학성적 총점 순으로 전형별 모집인원의 상위 3% 이내인 학생</li> <li>▷ SW(소프트웨어)인재전형: 입학성적 총점 순으로 전형별 모집인원의 상위 20% 이내인 학생</li> </ul>	입학년도 1학기 수업료의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생활우수자, 논술전형: 입학성적 총점 순으로 단과대학별 모집인원의 상위 5% 이내인 학생</li> <li>▷ 학생부교과우수자, 농어촌학생, 평생학습자, 특성화고졸재직자, 실기전형: 입학성적 총점 순으로 전형별 모집인원의 상위 5% 이내인 학생</li> <li>▷ SW(소프트웨어)인재전형: 입학성적 총점 순으로 전형별 모집인원의 상위 30% 이내인 학생</li> </ul>	입학년도 1학기 수업료의 30%
신입생 (정시 모집 일반)	<p>&lt; 공통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합격자 및 최초선발자에 한함</li> <li>▷ 모집군간 대학별/모집단위별 통합 순위 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모집단위별 최종단계 전형 총점 적용</li> </ul> </li> </ul>	

구분	선 정 기 준	지 원 내 역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영 총점: 1,000점</li> <li>- 수시모집 이월 전형(모집단위)(예: 평생학습자 전형, 특성화 고졸재직자 전형 등) 제외</li> <li>- 인문·자연 계열 통합 산정</li> </ul> ▷ 인원산정: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재학 중 연속(5년간, 4년간, 1년간)장학금 지급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li> <li>- 직전학기 평점평균 B<sup>0</sup>(3.0)이상</li> <li>- 직전학기 F학점이 없어야 함</li> </ul> ▷ <b>선발제외: 인공지능융용학과 2021~2022학년도 신입생</b>	
	▷ 대학별 1위 (다만, 공과대학은 2위까지 인정(총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 대학별로 전형총점이 높은 학생</li> <li>- 동점자는 선발기준(동점자 처리순위)에 따름</li> </ul>	수업료 전액 ※ 다만, 4년제는 최대 4년(8학기), 5년제는 최대 5년(10학기)까지 지원
	▷ 모집단위별 일정순위 합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점자는 선발기준(동점자 처리순위)에 따름</li> <li>- 정원 80명 이상인 학과(전공): 1위~4위</li> <li>- 정원 50명 이상인 학과(전공): 1위~3위</li> <li>- 정원 50명 미만인 학과(전공): 1위~2위</li> </ul>	입학년도 1년(2개학기)간 수업료 전액
	▷ 입학 최종단계 전형 총점 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상위 10% 이내인 학생	입학년도 1학기 수업료의 70%
	▷ 입학 최종단계 전형 총점 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상위 25% 이내인 학생	입학년도 1학기 수업료의 30%
신입생 (수시 및 정시 공통)	< 공통 > ▷ 계열은 모집요강에 명시된 것 기준으로 구분 ▷ 재학 중 연속(5년간, 4년간)장학금 지급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전학기 취득학점은 15학점 이상</li> <li>- 직전학기 평점평균은 3.75이상</li> <li>- 직전학기 F학점이 없어야 함</li> </ul> ▷ <b>선발제외: 인공지능융용학과 2021~2022학년도 신입생</b>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최우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계열: 수학 “가”, 영어, 국어와 탐구영역(2과목 평균)이 각각 2등급 이내이며, 4개영역 합이 5등급 이내</li> <li>- 인문계열(문예창작학과 제외):수학 “가” 또는 “나”, 영어, 국어와 탐구 영역(2과목 평균)이 각각 2등급 이내이며, 4개영역 합이 5등급 이내</li> <li>- 문예창작학과, 스포츠과학과: 국어, 영어, 탐구영역(2과목 평균)이 모두 1등급</li> </ul>	수업료 전액 생활관비 지원 생활보조금(30만원) 지급 ※ 다만, 4년제는 최대 4년(8학기), 5년제는 최대 5년(10학기)까지 지원

구분	선 정 기 준	지 원 내 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형대학: 국어, 영어, 탐구영역(2과목 평균)이 모두 1등급 이거나 국어, 영어, 수학 영역이 모두 1등급</li> <li>※ 선발인원: 위 장학기준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우리대학 자체 기준인 변환표준점수(1,000점 만점)성적 순으로 자연계열 2명, 인문계열 1명, 예체능계열 1명을 선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우수자</li> <li>- 자연계열: 수학 “가” , 영어, 국어와 탐구영역(2과목 평균)이 각각 2등급 이내이며, 4개영역 합이 6등급 이내</li> <li>- 인문계열(문예창작학과 제외): 수학 “가” 또는 “나” , 영어, 국어와 탐구영역(2과목 평균)이 각각 2등급 이내이며, 4개 영역 합이 6등급 이내</li> <li>- 문예창작학과, 스포츠과학과: 국어, 영어, 탐구영역(2과목 평균)이 각각 2등급 이내이며, 3개영역 합이 4등급 이내</li> <li>- 조형대학: 국어, 영어, 탐구 영역(2과목 평균)이 모두 2등급 이내이며 3개영역 합이 5등급 이내이거나, 국어, 영어, 수학 영역이 모두 2등급 이내이며 3개영역 합이 5등급이내</li> <li>※ 선발인원: 위 장학기준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우리대학 자체 기준인 변환표준점수(1,000점 만점)성적 순으로 자연계열 30명, 인문계열 10명, 예체능계열 10명을 선발함.</li> </ul>	<p>수업료 전액</p> <p>※ 다만, 4년제는 최대 4년(8학기), 5년제는 최대 5년(10학기)까지 지원</p>

1) 신입학 계속장학생 장학금 지급기준표

장학종류	선발 학년도	선발조건	지원내역	비 고
차세대 지도자(리더) 및 수시모집 성적우수	~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li> <li>▷ 직전학기 평점평균 B+(3.5)이상</li> <li>▷ 직전학기 F학점이 없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록금 전액</li> <li>생활관 무료</li> <li>생활보조금 지급</li> </ul>	
조형실기 우수	2009 ~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li> <li>▷ 직전학기 F학점이 없는 경우</li> <li>- 1~2학년: 평점평균 B+((3.5)이상</li> <li>- 3~4학년: 평점평균 3.7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록금 전액</li> <li>생활관 무료</li> </ul> (2009~2011해당)	
	2012 ~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li> <li>▷ 직전학기 F학점이 없는 경우</li> <li>- 1~2학년: 평점평균 B+((3.5)이상</li> <li>- 3~4학년: 평점평균 3.7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록금 전액</li> </ul>	
융합특성화 장학	20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li> <li>▷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li> <li>▷ 직전학기 F학점이 없는 경우</li> </ul>	4년(8학기)간 수업료 전액	입학전형시 대학수학능력 시험 성적 중 아래 중 하나의 성적으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 MSDE, ITM: 수리 “가” , 외국어(영어) 영역의 등급 합이 4이내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li> <li>▷ 직전학기 평점평균 3.5미만~3.0이상</li> </ul>	4년(8학기)간 수업료 50%	

장학종류	선발 학년도	선발조건		지원내역	비 고	
		▷ 직전학기 F학점이 없는 경우			- GTM: 언어, 외국어(영어) 영역의 등급 합이 4이내	
		▷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 직전학기 평점평균 3.5이상 ▷ 직전학기 F학점이 없는 경우		4년(8학기)간 수업료 50%	입학전형시 대학수학능력 시험성적 중 아래중 하나의 성적으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 MSDE, ITM: 수리 “가”, 외국어(영어) 영역의 등급 합이 5이내	
		▷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 직전학기 평점평균 3.5미만-3.0이상 ▷ 직전학기 F학점이 없는 경우		4년(8학기)간 수업료 25%	- GTM: 언어, 외국어(영어) 영역의 등급 합이 5이내	
재외국민과 외국인 장학금	2007 ~ 2009	▷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9학점 이상이며, F학점 과목이 없는 학생중 평점평균이 - 1학년은 2.0(C <sup>0</sup> )이상 - 2학년은 2.5(C <sup>+</sup> )이상 - 3.4학년은 3.0(B <sup>0</sup> )인 학생		등록금 전액		
외국인 장학금	2010	▷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 직전학기 F학점이 없는 경우				
		1 학 년	평점평균 C <sup>0</sup> (2.0)이상		수업료 50%	
			평점평균 C <sup>+</sup> (2.5)이상		수업료 전액	
		2 학 년	평점평균 C <sup>+</sup> (2.5)이상	TOPIK 3급, KLT 610점, KLPT 3급,	수업료 50%	
			평점평균 B <sup>0</sup> (3.0)이상	한글능력검정시험 3급 중 1종 선택	수업료 전액	
		3, 4 학 년	평점평균 B <sup>0</sup> (3.0)이상	TOPIK 4급, KLT 760점,	수업료 50%	
	평점평균 B <sup>+</sup> (3.5)이상		KLPT 4급, 한글능력검정시험 준2급 중 1종 선택	수업료 전액		
	2011 ~ 2017	직전학기의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F학점이 없는 경우				
		1 학 년	평점평균 C <sup>0</sup> (2.0)이상	TOPIK 4급 이상, KLPT 4급 이상,	수업료 50%	
			평점평균 C <sup>+</sup> (2.5)이상	TOEFL iBT 80 이상 또는 이에	수업료 전액	
			평점평균 B <sup>0</sup> (3.0)이상	해당하는 공인 어학 성적 소지자에 한함	수업료+생활관비 전액	
		2 학 년	평점평균 C <sup>+</sup> (2.5)이상	※ TOEFL(CBT 213, PBT 550, iBT 80),	수업료 50%	
평점평균 B <sup>0</sup> (3.0)이상			TOEIC 780,	수업료 전액		
평점평균 B <sup>+</sup> (3.5)이상	IELTS 6, TEPS 557		수업료+생활관비 전액			

장학종류	선발 학년도	선발조건		지원내역	비 고	
	3,4 학 년	평점평균 B <sup>0</sup> (3.0)이상		수업료 50%		
		평점평균 B <sup>+</sup> (3.5)이상		수업료 전액		
		평점평균 3.8 이상		수업료+생활관비 전액		
	2018 ~ 1~ 4 학 년	직전학기의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F학점이 없는 경우				
		평점평균 B <sup>0</sup> (3.0)이상	TOPIK 4급 이상, KLPT 4급 이상,	수업료 50%		
		평점평균 B <sup>+</sup> (3.5)이상	TOEFL iBT 80 이상 또는 이에	수업료 전액		
		평점평균 3.8 이상	해당하는 공인 어학 성적 소지자에 한함	수업료+생활관비 전액		
AIS 장학	2021~ 2022	▷ 직전학기의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으로 F학점이 없이 평점평균 B <sup>0</sup> (3.0)이상인 경우		4년(8학기) 간 수업료 전액	2021~ 2022학년도 인공지 능응용학과 정시 및 수시 신 입학생 전원 장학생 선발	

[별표 2] <개정 2020. 8. 25>

**성적우수장학금 지원기준** (제6조 관련)

구분	선 정 기 준		지원내역
재학생	<공통> -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 - 직전학기 F학점이 없어야 함		
	A등급	직전학기 평점평균 4.0 이상	수업료 전액
	B등급	직전학기 평점평균 3.75 이상	수업료의 50%
	C등급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	수업료의 20%
	명예 선발	성적우수장학 선발 대상이지만 타 장학금 수혜로 학과 추천 명단에서 차순위자로 양도 되는 경우	장학수혜증명서에 장학명 표기

-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장학금관리지침에 따라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생을 선발하되 동점자 처리 등 각 학과(부)의 특성에 따라 학과 자체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장학생 선발 대상자와의 친인척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사람은 학과 자체 선정기준 수립 및 장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한다.
- 2) 미래융합대학의 직전학기 취득학점은 12학점 이상으로 한다.
- 3) 명예 선발의 경우 장학수혜증명서 상의 장학명은 “성적우수[명예선발]” 로 표기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없기에 수혜내역의 금액은 모두 0원으로 표기하고, 장학 통계에도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3] <개정 2020. 8. 25>

### 법정장학금 지원기준 (제6조 관련)

구분	선 정 기 준	지원내역
국가 유공자	<p>▷ 대상자: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외)손자녀 중 면제증명서류 발급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제증명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배우자: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li> <li>· 자녀, (외)손자녀: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li> </ul> </li> <li>- 면제증명서류 발급처: 지방보훈청, 보훈지청, 주민센터 어디서나민원(구, 팩스민원) 발급신청, 정부민원포털 민원 24</li> <li>- 신입입생: 해당 증명서 제출자</li> <li>- 재학생: 해당 증명서 제출자 중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율환산점수 70점 이상인 자</li> <li>- 재입학생: 제적·자퇴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율 환산점수 70점 이상인 자</li> </ul> <p>▷ 법령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수업연한 제한 없음, 성적기준 없음</li> <li>- 유공자 (손)자녀: 수업연한 범위만 지원(계절학기 지원제외), 이미 면제받은 수혜 받은 학기 수 포함하여 연한(8회) 적용</li> </ul>	4년(8학기) 간 수업료 전액 ※ 다만, 5 년제인 경우는5 년(10학 기)까지 지원
북한 이탈 주민	<p>▷ 대상자: 북한이탈주민교육지원지침(통일부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면제증명서류 발급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서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시군구청 발급)</li> <li>- 신입입생: 해당자</li> <li>- 재학생: 해당자 중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율환산점수 70점 이상 (다만, 본인의 경우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2회(2학기) 연속 70점 미만인 경우 장학금 미지급)</li> </ul> <p>※ 거주지 보호기간(5년)이거나 대학입학 자격 취득일(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북한에서의 학력을 남한에서 인정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만 34세 이하의 주민</p> <p>▷ 법령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처음)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동안 지원</li> <li>-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li> </ul>	

1) 어디서나민원 및 민원24로 발급 시 3시간 정도 소요됨

[별표 4] <개정 2020. 10. 28.>

### 어의장학금 지원기준 (제6조 관련)

구분	선 정 기 준	지 원 내 역
성적기준 (공통)	▷ 신입생 · 편입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의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평점평균 2.75이상	
소득기준	▷ A등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본인명의로의 수급자 증명서 발급가능자) - 기초~소득 5구간(학자금지원구간, 구 소득분위) 이하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 I 유형 신청자) - 아동복지시설 기수용자 및 입학전형 시 소년소녀가정 - 본인 혹은 부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제의 3급 이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개정 <2019.6.4.> 전 장애등급제 상의 3급 이상 장애인과 동일	수업료 전액
	▷ B등급 - 소득 6구간~8구간(학자금지원구간, 구 소득분위)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 I 유형 신청자)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1) 장학금액은 신청인원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2) 어의장학금 신청인원에 따라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
  - 1순위: 소득구간(구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
  - 2순위: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높은 학생
  - 3순위: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높은 학생
- 3) A등급의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 I 유형 신청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동 기준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학자금지원구간) 학생을 제외하고, 차상위계층~5구간의 학생이 국가장학금 I 유형을 수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업료의 50%만 면제함



[별표 5] <개정 2021. 3. 2.>

### 봉사장학금 지원기준 (제6조 관련)

구분	선 정 기 준	지 원 내 역
재학생	▷ 대상자 : 학생자치기구 간부, 신문방송사 기자, 홍보대사 (어우미), 학군단 간부 등 ▷ 성적기준 : 직전학기의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평점평균 C+ (2.5) 이상	하단 2)의 봉사장학금 지급기준표 참조

- 1) 직전학기 봉사실적이 있으며 해당 직책을 한 학기동안 유지한 자에 한함
- 2)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도 수혜 가능(단, 2회에 한함)
- 3) 봉사장학금 지급기준표

(단위 : 명)

기구명	지 급 구 분							
	수업료 전액 면제		수업료 70% 면제		수업료 50% 면제		수업료 30% 면제	
	직위	인원	직위	인원	직위	인원	직위	인원
총학생회	(부)회장	2	부장급 이상	10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2			부장급 이상	10		
학생복지위원회	(부)회장	2			부장급 이상	6		
졸업준비위원회	(부)회장	2			부장급 이상	5		
재정감사위원회					위원장	1	위원	6
인권위원회					위원장	1	위원	3
교지편집실	회장	1			부장급 이상	6		
학군단			대대장	2	참모	8		
			중대장	2	소대장	4		
과 대 학 생 회	공과대학	(부)회장	2		부장급 이상	6		
	미래융합대학	(부)회장	2		부장급 이상	6		
	정보통신대학	(부)회장	2		부장급 이상	6		
	에너지바이오대학	(부)회장	2		부장급 이상	6		
	조형대학	(부)회장	2		부장급 이상	6		
	인문사회대학	(부)회장	2		부장급 이상	6		
	기술경영융합대학	(부)회장	2		부장급 이상	6		
	창의융합대학	(부)회장	2		부장급 이상	6		
학과 학생회					(부)학생회장	76		
신문방송사	편집장/국장/부장	8	차장	11	정기자	10		
홍보대사(어우미)	(부) 회장	2	홍보대사	23				

※ 학과 학생회의 봉사장학금은 학부(과), 전공(프로그램)별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을 각 1명씩 지원(계약학과 제외)

※ 학과 학생회 배정 학부(과)와 전공, 프로그램

대학	학부(과)와 전공, 프로그램
공과대학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기계설계자동화공학프로그램,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기계디자인금형공학프로그램, 기계·자동차공학과 기계공학프로그램, 기계·자동차공학과 자동차공학프로그램, 안전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정보통신대학	전기정보공학과, 전자IT미디어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에너지 바이오대학	화공생명공학과, 환경공학과, 식품공학과, 정밀화학과, 안경광학과, 스포츠과학과
조형대학	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전공, 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전공, 도예학과, 금속공예디자인학과, 조형예술학과
인문사회대학	행정학과, 영어영문학과, 문예창작학과
기술경영 융합대학	산업공학과 산업정보시스템전공, 산업공학과 ITM전공, MSDE학과, 경영학과 경영학전공, 경영학과 글로벌테크노경영전공
미래융합대학	융합공학부 융합기계공학전공, 융합공학부 건설환경융합전공, 융합사회학부 헬스피트니스전공, 융합사회학부 문화예술전공, 융합사회학부 영어전공, 융합사회학부 벤처경영전공
창의융합대학	인공지능응용학과

[별표 6]

**외국인장학금 지원기준** (제6조 관련)

구분	선정 기준		지원내역	
신입생 편입생	TOPIK 4등급 이상 + 서류심사 및 면접 심사 B 이상 또는 TOEFL iBT 기준 80 이상 <sup>1)</sup>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B 이상		수업료의 50%	
	TOPIK 5등급 이상 + 서류심사 및 면접 심사 B 이상 또는 TOEFL iBT 기준 90 이상 <sup>2)</sup>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B 이상		수업료 전액	
	TOPIK 6등급 + 서류심사 및 면접 심사 A 또는 TOEFL iBT 기준 100 이상 <sup>3)</sup>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A		수업료+생활관비 전액	
재학생	공통	직전학기의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F학점이 없는 경우		
	1~4 학년	TOPIK 4급 이상, TOEFL iBT 80이상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인 어학성적 소지자에 한함	직전학기 평점평균 B <sup>0</sup> (3.0)이상	수업료의 50%
			직전학기 평점평균 B <sup>+</sup> (3.5)이상	수업료 전액
			직전학기 평점평균 3.8 이상	수업료+생활관비 전액

1) 영어성적의 경우 영어트랙(MSDE 및 ITM 전공) 과정 전공자에 한하며, GTM전공은 입학당시 영어트랙과정 전공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함

1) TOEFL(iBT) 80, TOEIC 780, IELTS Band 6.0, TEPS 557 이상과 동일하게 적용  
 2) TOEFL(iBT) 90, TOEIC 850, IELTS Band 6.5, TEPS 680 이상과 동일하게 적용  
 3) TOEFL(iBT) 100, TOEIC 900, IELTS Band 7.0, TEPS 780 이상과 동일하게 적용

[별표 7]

국제교류장학금 지원기준 (제6조 관련)

선 정 기 준	지 원 내 역
▷ 대상자: 교환학생프로그램, 복수학위프로그램 등 학술교류협정으로 선정되어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재학생 또는 본교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학생	수업료 전액 체류비용 일부 지원

- 1) 국제교육본부 등 소관부서의 자체 선발계획에 의함
- 2)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도 수혜 가능(단,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제외)

[별표 8]

## SeoulTech 가족장학금 지원기준 (제6조 관련)

구분	선정 기준	지원내역
공통	▷ 대상자: 본교(대학원, 박사과정 포함)에 동시 재학하고 있는 2명 이상의 부부/부자/모자/형제/자매/남매 중 학생 1명	수업료의 50%
성적기준	▷ 신입생 · 편입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의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평점평균 B <sup>0</sup> (3.0)이상	

- 1) <별지 제2호> SeoulTech 가족장학금 신청서를 활용하여 신청
- 2) 수혜대상 학생은 학부생에 한함

[별표 9] <개정 2020. 8. 25>

### 공로장학금 지원기준 (제6조 관련)

구분	선 정 기 준	지 원 내 역
대 회 수 상 자	<p>▷ 대상자</p> <p>- 국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관 이상 또는 도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인이 날인된 상장을 수상한 학생</li> <li>· 주요일간지<sup>1)</sup>, 주요방송사<sup>2)</sup>가 주최하는 기술, 체육, 예능, 외국어분야 등의 대회에서 주최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상장을 수상한 학생</li> <li>· 수상내역이 주요일간지나 주요방송사를 통해 보도된 학생</li> </ul> <p>※ 다만, 수상내역이 국내·국외 주요일간지나 주요방송사에 보도된 경우 기사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소속 학생임이 명시되어 있어야 대상자로 인정함</p> <p>- 국외: 세계적인 대회(각 분야를 대표하고,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수상하였거나, 국내외 신문 또는 방송에 수상내역이 보도된 학생</p> <p>▷ 제출서류: 상장사본, 신청서</p> <p>▷ 성적기준: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이상, 평점평균B0(3.0)이상</p> <p>※ 주요일간지는 2017년도 한국ABC 협회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서울경기 지역에서 10만부 이상 발행된 종합일간지 10개사와 경제지 2개사를 지칭함</p>	<p>[대회수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등: 100만원</li> <li>○ 2등: 60만원</li> <li>○ 3등: 40만원</li> </ul> <p>※ 단체수상자 : 개인 별로 개인수상자의 50% 지급</p> <p>※ 타 장학금과 이중수혜 가능</p> <p>※ 최대 수혜가능 횟수 : 3회</p>
고 시 합 격 자	<p>▷ 대상자: 국가공무원 5급(행정, 기술)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최종 합격한 학생</p> <p>▷ 제출서류: 합격증</p>	<p>수업료 전액</p> <p>※ 졸업 시 까지</p>
1차	<p>▷ 대상자: 국가공무원 5급(행정, 기술)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1차 합격한 학생</p> <p>▷ 제출서류: 확인서</p>	<p>200만원</p>
특정분야 장려 자격증	<p>▷ 대상자: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노무사, 관세사 시험 1차/최종 합격자</p> <p>▷ 제출서류: 확인서</p> <p>※ 1차 합격 또는 최종 합격 중 한 번만 지급</p>	<p>100만원</p>

- 1) 타 장학금과 이중수혜 가능
- 2)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공로장학금 대상자 선정

---

1) 주요일간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2) 주요방송사: EBS, KBS, MBC, SBS

[별표 10] <개정 2021. 3. 2.>

### 능력인증장학금 지원기준 (제6조 관련)

선 정 기 준	지 급 액
<p>▷ 대상자: 직전학기의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평점평균 3.7 이상으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21년 졸업자격인증제 시행 이후 입학생 제외)</p> <p>① 외국어 실력 우수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어: TOEIC 900점, TOEFL (iBT)102점, (ITP)607점, TEPS 770점, New TEPS 432점, TOEIC Speaking 160점, TOEIC Writing 170점, OPIc AL, IELTS Band 7 이상</li> <li>- 일본어: JPT 880점 이상, JLPT N1급</li> <li>- 중국어: HSK 6급 이상</li> </ul> <p>② 전공관련 자격증(기사) 취득자로서 외국어실력 우수학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어: TOEIC 800점, TOEFL (iBT) 86점, (ITP)567점, TEPS 637점, New TEPS 348점, TOEIC Speaking 140점, TOEIC Writing 150점, OPIc IM3, IELTS Band 6.5 이상</li> <li>- 일본어: JPT 740점 이상, JLPT N2급</li> <li>- 중국어: HSK 5급 이상</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전공관련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에 한하며 민간자격증과 해외자격증은 제외</p>	50만원

- 1) 2021학년도부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함
- 2) 장학금 선발인원 및 금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다만, 신청인원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1순위는 평점평균이 높은 자,  
2순위는 취득학점이 높은 자, 3순위는 외국어 성적이 높은 자 순으로 선발함)
- 3)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자국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사용한 외국어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 4) 장학금 수혜는 재학 중 1회로 한정하며, 타 장학금과 이중수혜 가능
- 5) 우리 대학 입학 후 취득한 성적에 한함
- 6) 등급(점수)체제가 변경된 HSK는 신(新)HSK 기준을 적용
- 7) 능력인증장학금은 2022학년도까지만 운영. 지급요건이 충족된 학생은 2022학년도까지 장학금 지급 신청을 완료해야 함

[별표 11] 삭제 <2019. 9. 18.>

[별표 12] 삭제 <2019. 9. 18.>

## 근로장학금 지원기준 (제6조 관련)

구분	선정기준 및 근로시간	지급액
행정 근로	▷ 대상자 : 교내 부서에서 일정시간 근무하는 사람 - 당해 연도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 근로시간 이내 가능 ※ 방학 중 인원 감축 운영 - 시간제 단가 적용	장학위원회 확정금액
튜터	▷ 대상자 : 타 학생의 학습을 도와주기 위해 선정되어 튜터활동을 하는 사람 - 근로시간: 월 32시간 - 월 정액 지급	장학위원회 확정금액

- 1) 타 장학금과 이중수혜 가능,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도 선발 가능
- 2) 행정근로 및 튜터 장학생의 선발절차는 아래와 같다.
  - ① 학생처장이 매학기 시작 전에 부서별 근로 장학생 인원 배정
  - ② 장학복지팀에서 근로장학생 모집요강 공고
  - ③ 학생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과 추천을 받아 신청
  - ④ 해당부서는 지원 학생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선발한 후 선발 학생 추천서를 학생처장에게 제출
- 3) 행정근로 및 튜터장학금 지급액 산정기준
  - 매년 초(1월중) 장학위원회를 통해 단가를 확정하여 3월부터 적용한다.
  - 다만, 행정근로의 경우는 장학위원회에서确定的한 교내근로 장학금 단가금액이 최저임금위원회 시간급 최저임금 고시금액보다 적을 경우 이듬해 1, 2월의 교내근로 장학금 단가금액을 최저임금 고시금액으로 적용하여 지급한다.
  - 중도교체(또는 결근)시 장학금은 일할계산(실제근무일수/정상근무일수)한다.
- 4) 행정근로 및 튜터장학생 선발 및 관리
  - 선발 및 관리는 해당부서의 관리기준에 따른다.
  - 해당부서장은 소속 근로장학생의 근무상황내역을 익월 3일까지 학생처장에게 통보한다.
  - 근로 태만한 학생은 해당 부서장이 교체 선발하고 즉시 학생처장에게 보고한다.
  - 행정근로는 같은 부서에서 3학기까지만 계속 근무할 수 있다.
- 5) 기타사항
  - 근로장학생을 추가 배정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근로장학생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계절학기 튜터 장학생 및 방학기간 중 행정근로 장학생 운영은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하다.
  - 이 지침 외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처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14] <개정 2021. 3. 2.>

## 학생DREAM마일리지장학금 지원기준 (제6조 관련)

선 정 기 준	지 급 액
▷ 대상자: 대학생할 중 교내 필수교육 참여 또는 대학과 지역사회 협력에 기여하여 마일리지를 획득한 사람 ▷ 활동영역 - 필수교육 참여: 교내 부서에서 운영하는 필수 교육에 참여 - 대학 - 지역사회 협력 기여: 대학 및 지역사회 협력에 기여	마일리지 1점당 1,000원

- 1) 타 장학금과 이중수혜 가능
- 2)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도 수혜 가능 (2020학년도부터 적용)
- 3) 신청절차 및 세부사항
  - 마일리지 점수는 1점당 1,000원씩 환산하여 지급
  - 마일리지 적립 점수는 10점(1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4) 그 밖의 사항
  - 장학생 선발인원 및 금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다만,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1순위는 고학년, 2순위는 마일리지 신청금액이 많은 학생 순으로 선발함)
- 5) 마일리지 장학금 영역별 인정점수 기준

마일리지 항목	인정기준	마일리지 점수부여	실적인정 방법	적립방법
<b>필수교육참여</b>	▷ 교내 부서에서 주관하는 필수교육 참여자 - 성희롱·폭력예방교육, 재난안전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스마트폰 중독예방 교육 등 참석자	5	주관부서 일괄입력	교내 주관부서에서 참여학생명단 확인 후, 마일리지 일괄 부여
<b>대학 - 지역사회 협력기여</b>	▷ 우리 대학과 지역사회 협력에 기여한 자 - 우리 대학 및 지역사회 상생을 도모하고자 노원구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한 자 ※ 재학중 1회에 한정하여 마일리지 부여	30	주관부서 일괄입력	주관부서에서 대학·지역협력 기여자 선발 후 마일리지 일괄부여

- ※ 주관 부서에서 제출하는 마일리지만 인정함
- ※ 필수교육참여 마일리지 부여기준: 1시간 당 5마일리지 적립

[별표 15] <개정 2020. 8. 25>

**특별지원장학금 지원기준** (제6조 관련)

선 정 기 준	지 급 액
<p>▷대상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가정환경이나 경제사정 변화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가계곤란을 겪는 학생을 대상</p> <p>▷선발방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상황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총장이 선발하거나, 단과대학장이나 학과장이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총장이 선발</p>	<p>수업료 감면 또는 생활비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p>

1) 타 장학금과 이중수혜 가능

[별표 16]

## SeoulTech 희망장학금 지원기준 (제6조 관련)

선 정 기 준	지 급 액
<p>▷대상자 : 저소득층 재학생 중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생 선발</p> <p>▷소득기준 및 성적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초~소득 5구간(분위) 이하</li><li>-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li><li>- 직전학기 백분위 환산점 90점(평점평균 3.63) 이상</li></ul>	<p>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p>

- 1) 매 학기별 장학생 선발 시 선정기준 및 지급금액, 지급횟수는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 생활비 성격으로 현금장학금 지급

[별표 17]

학과평가장학금 지원기준 (제6조 관련)

선 정 기 준	지 급 액
학과평가지원금 사용 계획에 따라 각 학과에서 장학 추천을 받은 학생	학과평가 결과에 따라 각 학과에서 요청하는 금액

[별표 18] <개정 2020. 8. 25>

인재원장학금 지원기준 (제6조 관련)

선 정 기 준	지 원 내 역
<p>▷ 대상자 : 입학 당시 우수학생으로 선발 또는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인재원에서 적격자로 추천한 자</p> <p>▷ 선발기준 : 인재원 기준에 따름</p>	생활관비 지원

[별표 19] 삭제 <2020. 8. 25.>

[별표 20] <신설 2021. 3. 2.>

현장실습장학금 지원기준 (제6조 관련)

선 정 기 준	지 원 내 역
▷ 대상자: 단기현장실습 및 장기현장실습(Co-op) 프로그램, 해외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자체 지원계획에 의함

- 1) 취업본부 등 소관부서의 자체 선발계획에 의함
- 2)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도 수혜 가능(단,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제외)

[별표 21] <신설 2021. 3. 2.>

**고품질교육보증 장학금 지원기준** (제6조 관련)

선정 기준	지원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급대상: 강의평가 결과(환산점수)가 70점 미만인 강좌 수강학생</li><li>▷ 선정방법: 교육혁신처에서 대상자 선정</li><li>▷ 지급기준: 해당 강좌의 수강학점에 강사료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li></ul>	학점 × 강사료 단가

- 1) 강사료 단가 기준: 전임교원 초과 강사료 단가
  - ※ 전임교원 초과 강사료 단가: (‘20년 기준) 학점 당 34,500원
    - ▶ (지급액 예시) 34,500원 × 3학점 = 103,500원 → (장학금액) 100,000원
  - ※ 지급액: 천 단위 절사 후 지급
  - ※ 매년 강사료 지급 기준에 따른 단가 적용
- 2) 타 장학금과 이중수혜 가능
- 3)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도 수혜 가능
- 4) 당해학기 납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생활비성 장학금)
- 5) 예산에 따라 장학금이 지급되는 강좌 수는 조정될 수 있다.

[별표 22] <신설 2021. 3. 2.>

## ST인턴장학금 지원기준 (제6조 관련)

구분	선정기준 및 근로시간	지급액
ST 인턴	▷ 대상자 : 교내 부서에서 전공분야 또는 전문분야 인턴으로 근무하는 사람 - 당해 연도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 근무시간 이내 가능 - 시간제 단가 적용	장학위원회 확정금액

- 1) 타 장학금과 이중수혜 가능,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도 선발 가능
- 2) ST인턴장학생 선발절차
  - ① 학생처장이 매학기 시작 전에 부서별 ST인턴 인원 배정
  - ② 장학복지팀에서 ST인턴 모집요강 공고
  - ③ 지원학생은 학과 지도교수 추천을 받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지원서 제출
  - ④ 해당부서는 지원 학생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선발한 후 선발 학생 추천서를 학생처장에게 제출
- 3) ST인턴 지급액 산정기준
  - 매년 초(1월중) 장학위원회를 통해 단가를 확정하여 3월부터 적용한다. 장학위원회에서 확정된 ST인턴 장학금 단가 금액이 최저임금위원회 시간급 최저임금 고시금액보다 적을 경우 장학금 단가는 최저임금 고시금액으로 적용하여 지급한다.
  - 중도교체(또는 결근)시 장학금은 일할계산(실제근무일수/정상근무일수)한다.
- 4) ST인턴 관리
  - 해당부서장은 소속 ST인턴의 업무일지를 확인하여 익월 3일까지 학생처장에게 'ST인턴장학금 지급 요청' 을 해야 한다.
  - 업무 대만한 학생은 해당 부서장이 교체 선발하고 즉시 학생처장에게 보고한다.
  - ST인턴은 4학기까지만 계속 근무할 수 있다.
- 5) 기타사항
  - ST인턴을 배정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ST인턴장학생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ST인턴은 학생처로 1학기에 1회 이상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제출이 완료된 학생은 'ST인턴 경력증명서' 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이 지침 외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처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23]

**(대학원)성적우수장학금 지원기준** (제10조 관련)

구분	선 정 기 준	지 원 내 역
대학원 재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대상: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단, 정원 외 외국인학생, 입학성적우수장학금 대상자는 제외)</li> <li>▷ 선정기준: 직전학기 취득학점 6학점 이상, 평점평균 3.7 이상, C<sup>0</sup>학점이하 과목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과별·학위과정별 재학인원 대비 상위 30%(100만원 기준)를 배정한 후 3가지 장학금액으로 학과 자율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과별 산출인원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li> <li>※ 재학생 수 1명인 학과는 장학금 지원 불가</li> <li>※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학금 중복지원 가능</li> </ul> </li> <li>▷ 추천제외자: 최근 2년간 부정행위, 징계 등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li> </ul>	<p>50만원 100만원(배정기준액) 150만원</p> <p>※ 학비감면</p>

[별표 24] <개정 2019. 9. 18.>

**(대학원)어의장학금 지원기준** (제10조 관련)

구분	선 정 기 준		지원내역			
대학원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6학점 이상으로, F학점이 없는 경우  ▷ 선정방법 -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 중에서 대학원장이 선발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본인	수업료의 50%  ※ 학비감면		
		2순위	▷ 아동복지시설 기수용자 ('15.12.21. 기준 만30세 미만 미혼)		수업료 100만원  ※ 학비감면	
		3순위	▷ 차상위저소득계층 본인			수업료 100만원  ※ 학비감면
		4순위	▷ 차차상위계층 저소득자			
		5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족 (조부·조모·부·모·자녀)	수업료 100만원  ※ 학비감면		
		6순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부·모·자녀)		수업료 100만원  ※ 학비감면	
		7순위	▷ 그 밖의 가계곤란자 중 지도교수 추천자			수업료 100만원  ※ 학비감면

1) 동일순위 내 선발기준

- 1순위: 총 평점평균이 높은 사람
- 2순위: 총 취득학점이 높은 사람

(대학원)외국인장학금 지원기준 (제10조 관련)

구분	선 정 기 준		지 원 내 역	
신입생	▷ 대학원 - 입학성적우수자 (어학능력, 학부성적, 학업계획서 등 종합심사)		등록금 50~100% 범위 내 지원 (학과기준 : 등록금 75% 감면)	
재학생	▷ 일반대학원			
	2014학년도 이전	평점평균 4.3이상	등록금 50%+생활관비 전액 지원 (1인실 제외)	
		평점평균 3.7이상	등록금 50%	
	2015학년도 이후	평점평균 3.5이상	등록금 50~100% 범위 내 지원	
	▷ 특수/전문대학원			
	2017학년도 전기 이전	특수대학원	평점평균 4.3이상	등록금 50%+생활관비 전액 지원 (1인실 제외)
			평점평균 3.7이상	등록금 50%
		전문대학원	평점평균 4.0이상	등록금 50%+생활관비 전액 지원 (1인실 제외)
			평점평균 3.7이상	등록금 50%
	2017학년도 후기 이후	평점평균 3.5이상	등록금 50~100% 범위 내 지원	
▷ 공통 -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6학점 이상이며, C <sup>0</sup> 학점 이하 과목이 없는 대학원생 대상 (단, 졸업학기 재학생은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6학점 이하인 경우에도 가능) - 학생조교는 별도의 장학금 지원 - 지원기간 · 석사: 4개학기 + 1개학기 (졸업 및 수료 불가자에 한정하여 1개학기 추가지원) · 박사: 4개학기 + 2개학기 (졸업 및 수료 불가자에 한정하여 2개학기 추가지원)				

1)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별표 26]

**(대학원)봉사장학금 지원기준** (제10조 관련)

선 정 기 준	지 원 내 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대상자: 원우회 업무운영 등에 공로가 있는 학생</li><li>▷ 성적기준: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li><li>▷ 선정인원<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회장: 각 대학원별 1명</li><li>- 임원: 일반대학원 6명, 특수 및 전문대학원 3명</li></ul></li></ul>	수업료 감면 - 회장: 100만원 - 임원: 50만원

[별표 24에서 별표 27로 개정 후] 삭제 <2021. 3. 2.>

[별표 28] 개정 <2021. 3. 2.>

**(대학원)학생조교장학금 지원기준** (제10조 관련)

선 정 기 준	지 급 액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조교 운용 지침」에 따름	월 최대 65만원 지급

[별표 26에서 별표 29로 개정 후] 삭제 <2021. 3. 2.>

[별표 27에서 별표 30으로 개정 후] 삭제 <2021. 3. 2.>

(대학원)공로장학금 지원기준 (제10조 관련)

선 정 기 준		지 급 액
대회 수상자	<p>▷ 대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장관 및 장관급 기관장, 광역시단체장, 4년제 대학총장, 주요일간지(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주요방송사(EBS, KBS, MBC, SBS)가 주최하는 기술. 체육. 예능. 외국어분야 등의 대회에서 수상한 사람 또는 수상내역이 주요일간지(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나 주요방송사(EBS, KBS, MBC, SBS)를 통해 보도된 사람</li> <li>- 국외: 세계적인 대회(각 분야를 대표하고,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수상하여, 국내외 신문 또는 방송에 수상내역이 보도된 학생 (단,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주최 기관장 명의의 상장을 확인하여 공로장학생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한다.)</li> </ul> <p>▷ 제출서류: 상장사본, 신청서, 추천서</p> <p>▷ 성적기준: 직전학기 취득학점 6학점 이상, 평점평균B<sup>0</sup>(3.0)이상</p>	<p>[개인수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등: 100만원</li> <li>○ 2등: 60만원</li> <li>○ 3등: 40만원</li> </ul> <p>[단체수상자] 개인별로 개인수상 지급액의 50%</p> <p>* 재학 중 1회로 한정함</p>
고시 합격자	<p>▷ 대상자: 사법·행정·외무·기술고등고시, 지방고등고시 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p> <p>▷ 제출서류: 합격증</p>	<p>수업료 전액</p> <p>* 졸업시까지</p>
특정분야 장려 자격증	<p>▷ 대상자: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노무사, 관세사, 건축사, 기술사 시험 최종 합격자</p> <p>▷ 제출서류: 확인서</p>	<p>100만원</p>

[별표 32] <신설 2020. 2. 6.>

**(대학원)학·군제휴 장학금 지원기준** (제10조 관련)

구분	선 정 기 준	지 급 액
대학원	▷대상 - 학·군제휴 협약에 따라 군재직자로서 당해학기 6학점 이상 등록한 국방방호공학과 학생 ▷성적기준 - 신입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 직전학기 평점평균 3.6이상 ▷지원 : 최대 4개 학기 지원 ▷제출서류 : 군재직증명서	수업료 최대 50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별표 33] 개정 <2021. 3. 2.>

**(대학원) 신진연구인재장학금 지원기준** (제10조 관련)

선 정 기 준	지 급 액
<p>▷ 석사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선정대상: 학사과정 재학기간 중에 SCI(E)급 학술지에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논문을 1편 이상 발표한 학생</li><li>- 선정기준: 대학원위원회에서 해당 학생의 연구실적 우수성 여부를 심사하여 지급여부 결정</li><li>- 계속지원조건: 직전학기 취득학점 6학점 이상, 평점평균 4.0 이상 충족</li><li>- 지원기간: 최대 4개 학기 지원</li></ul>	등록금 전액

- ※ 석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제외
- ※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제외
-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별표 34] 개정 <2021. 3. 2.>

**(대학원) 미래인재장학금 지원기준** (제10조 관련)

선 정 기 준	지 급 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대상 : 예비교육연구단(팀) 참여 대학원생(내국인 전일제 대학원생)</li> <li>▷ 선정방법 :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학기 선정</li> <li>▷ 지원기간 : 4학기(석·박사통합과정 8학기)</li> <li>▷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기초 : 지도교수와 공동연구 계획서 제출</li> <li>- 학기말 : 연구보고서 제출</li> </ul> </li> <li>▷ 의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사과정: 4학기 이수 전에 KCI 이상 논문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발표</li> <li>- 박사과정: 4학기 이수 전에 SCI(E)급 논문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발표</li> <li>- 석·박사통합과정: 4학기 이수 전에 KCI 이상 논문, 8학기 이수 전에 SCI(E)급 논문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발표</li> </ul> </li> <li>※ 해당 저널에서 게재 확정(accepted)된 논문은 ‘발표’로 인정</li> <li>※ 학위논문 제출 자격 취득을 위한 발표 논문 제외</li> <li>▷ 지원방법 : 현금장학금 (3·9월 50%, 6·12월 50% 지원)</li> <li>▷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료 범위 내에서 다른 장학금 중복 지원 가능</li> <li>다만, 학생조교장학금(연구조교, 교육조교, 행정조교) 중복 지원 불가</li> <li>- 공로장학금은 수업료를 초과하여 미래인재장학금과 중복 지원 가능</li> </ul> </li> </ul>	수업료 전액

※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이 결정

※ 특수대학원 제외

[별표 35] <신설 2021. 3. 2.>

**(대학원) 혁신인재장학금 지원기준** (제10조 관련)

선 정 기 준	지 급 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대상 : 산업사회 문제 해결 분야(인문사회분야융복합, 예체능분야융복합 등) 예비교육연구단(팀) 참여 대학원생 (내국인 전일제 대학원생)</li> <li>▷ 선정방법 :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학기 선정</li> <li>▷ 지원기간 : 4학기(석·박사통합과정 8학기)</li> <li>▷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기초 : 지도교수와 공동연구 계획서 제출</li> <li>- 학기말 : 연구보고서 제출</li> </ul> </li> <li>▷ 의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사과정: 4학기 이수 전에 KCI 이상 논문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발표</li> <li>- 박사과정: 4학기 이수 전에 SCI(E)급 논문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발표</li> <li>- 석·박사통합과정: 4학기 이수 전에 KCI 이상 논문, 8학기 이수 전에 SCI(E)급 논문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발표</li> </ul> </li> <li>※ 해당 저널에서 게재 확정(accepted)된 논문은 ‘발표’로 인정</li> <li>※ 학위논문 제출 자격 취득을 위한 발표 논문 제외</li> <li>※ 인문사회 및 예체능 계열, 건축계획·건축설계·도시계획·도시설계 분야의 경우 KCI 논문 3편으로 SCI(E)급 논문 대체 가능</li> <li>※ 전시회 등 그 밖의 연구실적에 대한 KCI 또는 SCI(E) 논문 대체 여부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이 따로 지정</li> <li>▷ 지원방법 : 현금장학금 (3·9월 50%, 6·12월 50% 지원)</li> <li>▷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료 범위 내에서 다른 장학금 중복 지원 가능</li> <li>다만, 학생조교장학금(연구조교, 교육조교, 행정조교) 중복 지원 불가</li> <li>- 공로장학금은 수업료를 초과하여 미래인재장학금과 중복 지원 가능</li> </ul> </li> </ul>	<p>수업료 전액</p>

※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원장이 결정

※ 특수대학원 제외

<별지 제1호서식>

## 장학금 포기 확인서

학생정보 및 포기장학금	수혜학기	학년도		학기		
	성 명		학 번		학년	
	학 과 명		연락처			
	포기 장학금명		포기 장학금액			
			원			

포 기 사 유  
(해당 사유 에  
체크(✓)표시하고  
내용 기입)

- 타 교내장학 수혜(수혜 장학금명: )
- 그 밖의 사유 :

위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장학금을 포기하고자 장학금 포기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향후 어떠한 사유로도 본교에 이의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장학금 이중수혜 금지 근거: 본교 장학생 선정 및 지급 규정 제11조(이중수혜 금지)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귀하



<b>각종 봉사(교내 및 교외) 등에 대한 참여 확인서</b>				
<b>행사 (봉사) 기관</b>	<b>행사(봉사)명</b>	(세부주제: _____ )		
	<b>주관(봉사)기관</b>	<b>기 관 명</b>	<b>부서명</b>	<b>연락처</b>
	<b>개최(봉사)장소</b>			
	<b>행사(봉사)일시 및 기간</b>	_____년 _____월 _____일 ~ _____년 _____월 _____일(총 일) 참여(봉사)시간: _____시간		
<b>학생</b>	<b>소 속</b>	<b>대학</b>		<b>학과(프로그램, 전공)</b>
	<b>성 명</b>		<b>학 번</b>	
	<b>연 락 처</b>	<b>핸드폰: 자 택:</b>	<b>E-mail</b>	
<b>봉사활동개요:</b>   ☞ 6하원칙에 따라 한글 자수 기준 100자 내외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에는 행사관련 안내장 또는 프로그램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위 학생은 상기 행사에 참석하였음을 확인합니다.</b>  _____년 _____월 _____일  <b>봉사 기관 현장 담당자(직·성명):</b> _____ (인 또는 서명) (연락처 전화: _____ E-mail: _____ )				
<b>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귀하</b>				

※ 본 확인서는 학생들의 경력개발을 위하여 각종 행사에 참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소정의 서식에 기입하여 주시고, 후에 확인 시에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책임자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도록 연락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확인증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제 0000 - 000000호

## 근로장학 경력 증명서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학번	
	대학명			학과명		
경력사항	구분	근무기간		근무기관	근무부서	
		부터	까지			
용 도						

상기인은 교내장학사업의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위와 같이 활동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별지 제5호서식>

제 0000 - 000000호

ST인턴 경력 증명서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학번
	대학명			학과명	
경력사항	구분	근무기간		근무기관	근무부서
		부터	까지		
	000인턴				
활동내역					
용도					
<p>상기인은 위와 같이 활동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20    년    월    일</p> <p>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p>					